

대구광역시 재단법인대구청소년종합지원센터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8. 1.
제 출 자 : 대구광역시장

1. 제안이유

청소년들의 활동진흥과 위기청소년 상담·보호 등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재단법인 대구청소년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대구광역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재단법인대구청소년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함(안 제3조).
- 나. 법인의 사업을 정함(안 제5조).
 - 청소년활동진흥센터·상담지원센터·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사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청소년 관련사업 등
- 다. 법인의 기본재산은 국가 및 시가 출연 또는 출자한 재산 등으로 하고, 운영경비는 국가 및 시 보조금과 기타 수입금 등으로 함(안 제6조, 제13조).
- 라. 법인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7~11명의 이사와 감사 2명 을 두고, 이사장은 행정부시장으로 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민법」 제32조·제40조·제43조, 「청소년기본법」 제46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조)
- 나. 예산조치 : 40백만원('08년도 당초예산에 반영)
- 다. 기 타 : 입법예고('07. 6. 29 ~ 7. 20)결과, 붙임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제출자	의 견 요 지	반영여부
(재)대구YMC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광역시 청소년쉼터의 운영을 대구시가 신설하는 법인이 맡는 것을 재검토 하고, 기존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고용대책 요청 ※ 최종의견 : 법인설립에 동의하나, 위탁 종료를 위한 준비기간 요청 (1~ 2개월정도) 	일부반영 -희망직원은 고용승계
(사)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광역시 청소년쉼터를 다른 청소년 시설과 같은 공간에서 운영하는 것을 재검토 요청 	일부반영 - 쉼터는 다른 시설과 건물 층을 분리하여설치
(사)퀵리라이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광역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법인설립 및 통합운영을 재검토하고 시행시기를 유보할 것을 요청 	미반영 -통합운영을 조건으로 국비를 지원 받았고, 타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행시기 유보불가
대구광역시 청소년단체 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광역시 청소년종합지원센터의 시직영이 바람직 하고, 통합운영을 위한 법인설립 시 2~3년간 유보 요청 ※ 최종의견 : 법인설립에 동의하며 '07.12.31위탁종료 가능 	일부반영 - 시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센터 운영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재단법인대구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활동진흥, 위기청소년의 상담·지원 및 긴급구조, 보호 등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인의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법인설립)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한다.

제4조(명칭 및 소재지) ①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대구청소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② 센터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사업) 센터는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대구광역시 청소년종합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
2.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 활동진흥을 위한 사업
3.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치료 등의 사업
4.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가출청소년의 일시적인 생활지원과 선도, 가정·사회로의 복귀를 위한 사업
5.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각종 청소년 관련 사업
6. 기타 센터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센터의 기본재산은 국가 및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연 또는 출자한 재산 등으로 조성한다.

제7조(정관에 관한 사항) ① 센터는 정관에 「민법」 제40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재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2. 이사회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 처분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5. 회계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센터의 해산에 관한 사항
8. 기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센터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임원) ① 센터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며, 이사장은 행정부시장이 된다

② 임원의 임기와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이사회) ① 센터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 업무를 통할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이사회 의 소집·의결정족수·의결사항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직원의 임면) 센터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 제11조(보조금 등 교부) 시장은 센터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센터에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제12조(회계연도) 센터의 회계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3조(운영재원 등) 센터의 시설·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 및 시의 출연금 및 보조금, 센터의 사업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 제14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소년관련 시책·사업 및 시설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5조(수익사업) 센터는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6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청소년기본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센터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17조(사업계획과 예산·결산) ① 센터는 연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센터는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8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9조(운영규정)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정관의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 제20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민 법]

-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제43조(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청소년기본법]

제46조 (시·도의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 설치) ① 시·도지사는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치료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기능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을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 ④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을 법인으로 설치할 수 있다.
- ⑤ 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기관에 대하여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 (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출청소년의 일시적인 생활지원과 선도, 가정·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청소년쉼터의 설치자 또는 운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 쉼터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청소년의 생명·신체에 관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쉼터의 설치·운영 및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조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 등) 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이하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지역 청소년활동의 요구에 관한 조사
 - 2. 지역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 3.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의 지원
 - 4. 인증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의 홍보와 지원
 - 5.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 6. 청소년활동에 대한 교육과 홍보
 - 7. 그 밖에 청소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③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경우 한국청소년진흥센터와 연계·협력한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